

중국의 식품안전법제 체계와 주요 내용

손한기 ▶ 중국 중남민족대학 로스쿨 교수

I. 들어가며

II. 식품안전법제의 변천 및 식품안전법의 개정 배경

III. 현행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

IV.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의 개정 현황

V. 나가며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이 글로벌화 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I. 들어가며

중국에서 “식품이란 사람에게 제공되는 식용 또는 음용의 완제품과 그 원료 및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중약재이기도 한 물질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물질은 제외된다”. 우리의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¹⁾고 정의하고 있는데 중국의 정의와 크게 차이가 없다. 즉 식품이란 치료목적의 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식품은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며, 따라서 ‘안전’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 즉 “식품은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중국의 경우 예로부터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기며, 식품은 ‘안전’이 우선이다.(民以食为天, 食以安为先)” 말이 있을 정도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멜라민 분유사건, 쓰레기 식용유사건, 인조계란유통, 가짜 녹색돼지고기 사건 등 일련의 식품안전²⁾과 관련한 사건은 중국 국내는 물론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의 식품안전문제 해결, 중국 내 식품의 수출활성화 등을 위해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 식품안전법제의 변천과 개정배경을 중국식품안전의 기본법인 「식품안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작년(2015년)에 전면 개정된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사항 및 신설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식품안전법제의 변천 및 식품안전법의 개정 배경

1. 식품안전법제의 변천

중국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정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관리

1) 식품안전법 제150조 제1항.

2) 식품안전법 제150조 제2항은 “식품안전이란 식품이 무독하고, 무해하며,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할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체건강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초래하지 않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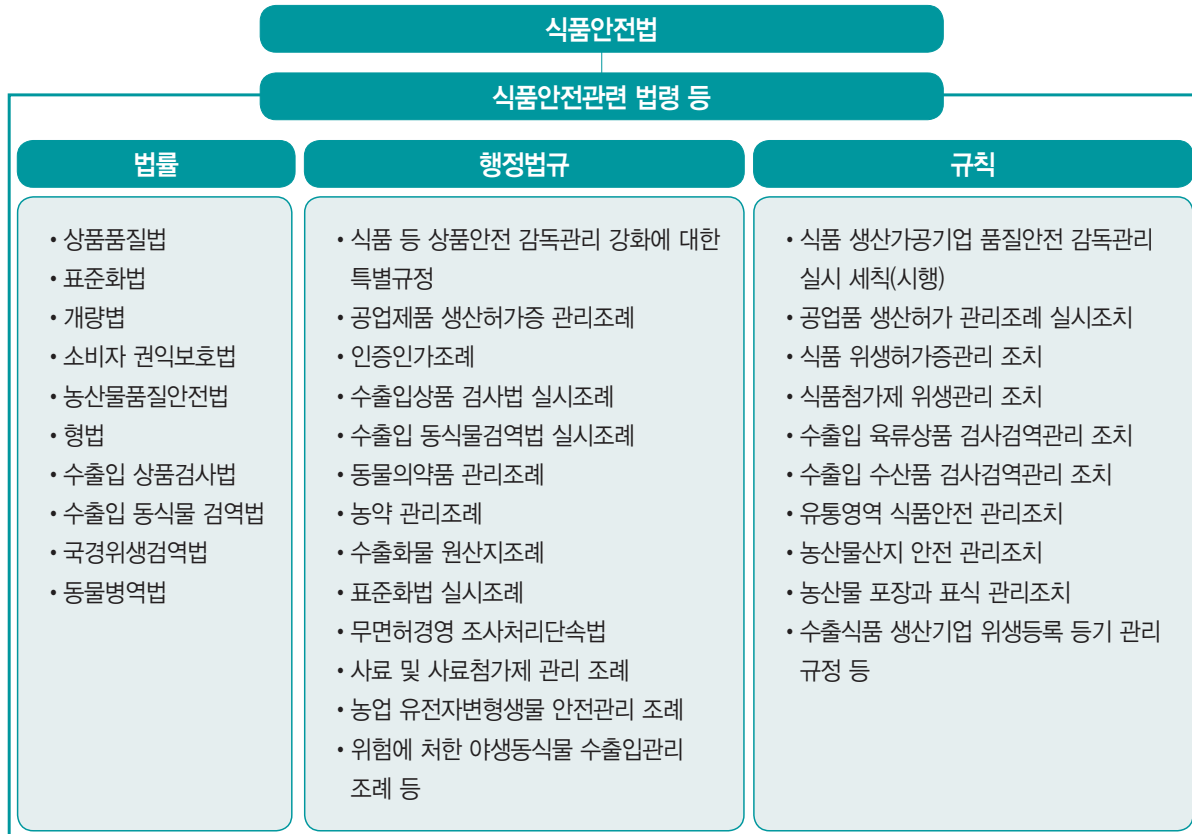
조례(1789년)이다. 동 조례는 당시 문화혁명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막 개혁개방을 시작한 단계에서 중국 국내의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로서, 중국 최초의 정식법규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경우 우리처럼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법률유보의 원칙),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을 먼저 제정해서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 실시의 효과가 양호할 경우 상위법령인 법률을 제정하는데 중국에서 이러한 입법태도를 ‘경험입법사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동 법규는 현행 중국 「식품안전법」의 전신인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1982년 「식품위생법(시행)」을 제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으며, 지난 1995년 정식 「식품위생법」을 제정하여 실시했다. 동법은 지난 2009년 「식품안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중국식품안전법제의 기본법으로 기능해 온 법으로서 무려 14년간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식품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그 중 동법은 식품의 생산-가공-판매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 중 식품의 생산가공에만 치중하고 있었으며, 특히 식품위생감독과 관련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안전 확보 및 자국 식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기존 식품 관련 법률의 주된 목적이 ‘위생’에서 ‘안전’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식품안전법」의 시행 이후에도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식품안전법」을 제정해서 실시한 지 6년도 되지 않은 2015년에 전면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에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과정이 상당히 장기인 점을 감안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동 법률에 대한 전면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은 중국 내 식품안전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식품안전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1〉 중국의 식품안전법 기본법의 변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관리조례(1979) - 국무원
 식품위생법(시행)(1982) - 전인대 상무위원회
 식품위생법(1995) - 전인대 상무위원회
 식품안전법(2009 제정) - 전인대 상무위원회
 식품안전법(2015 전면개정) - 전인대 상무위원회

〈그림 1〉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체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15면.

2.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배경³⁾

「식품안전법」의 개정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식품안전사고의 연이은 발생

「식품안전법」의 제정 이후에도 식품안전사고⁴⁾가 줄기는커녕 연이어 발생하였다. 따라

3) 식품안전법이 개정된 이유는 중국에서 식품안전문제의 발생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1.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의 부족, 2. 완비된 법률체계의 결여, 3. 언론의 감시기능 부족, 식품산업 관련 표준의 결함, 4.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강화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월간) 중국 농업 브리프, 2014-6, 2~3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식품안전법 제150조는 “식품안전사고란 식원성질병(食源性疾病), 식품오염 등 식품에서 유래한 인체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국민들이 여전히 식품안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자국 식품에 대한 불감증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수입식품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⁵⁾

(2) 감독기관(식품안전관리체계)의 분산화로 인한 감독책임회피 및 책임소재 불분명

중국의 경우 식품안전감독기관이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고 특히 중앙기관의 경우 5개 기관(위생부, 농업부, 공상행정관리국, 식품약품관리국, 품질검사검역총국)이 식품의 생산, 유통, 외식서비스 등에 대해 단계별 관리감독을 시행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많은 관계로서 중복되는 업무영역의 존재, 이로 인한 감독 사각지대 발생, 문제발생시 책임회피 등의 문제가 자주 불거졌다. 물론 이들 5개 부처의 업무 조정 및 소통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식품안전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동 기구의 지위상의 한계 및 기존 위생부와 업무중복 및 충돌로 인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다.⁶⁾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국무원 기구개혁을 계기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CFDA)을 신설하였다.⁷⁾

(3) 법적 제재의 미비로 인하여, 피해자 구제 불가

식품안전사고 관련 민·형사 책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간략하여⁸⁾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구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식품소비자와 식품생산기업간의 정보비대칭의 문제, 재판에서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위 ‘잠자는 조항’으로 불릴 만큼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또한 법원에서 소비자의 징

5) 주간무역,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21067>.

6) 노은영, “중국식품안전법 개정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년 제6호, 42면.

7) 중국식품안전법 제5조 제2항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본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상의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가 바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다. 동 조직은 2013년 3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관공실을 통합한 기구로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비롯한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에 나뉘어 있는 식품·의약품 관리 감독 기능을 이관 받아 유관 업무의 효율성 증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8) (구) 식품안전법 제96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고, 인체, 재산 혹은 기타 손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8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⁹⁾ 또한 식품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중국에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표 2〉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 과정

2014년 5월 14일 국무원에서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 통과
 2014년 6월 2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 식품안전법 개정초안 1차 심의
 2014년 12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 2014년 12월 개정초안 2차 심의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 식품안전법 개정안 통과(2015. 10. 01 정식 시행)

Ⅲ. 현행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¹⁰⁾

현행 「식품안전법」(2015년)은 구 「식품안전법」에 대한 전면개정이다. 기존 104개 조항에서 50개 조항이 추가된 154개 조항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그 중 약 80개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이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의 대부분은 관리감독체계와 법률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식품안전주체가 관련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명확히 하고 처벌강도를 강화했다.¹¹⁾

특히 현행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史上最严) 「식품안전법」으로 평가받고 있

9)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은영, “중국식품안전법 개정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년 제6호, 43~45면, 47~48면 참조.

10) 이 부분의 내용은 필자가 중국식품안전법과 중국 인터넷 및 신문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으로 주로 참고한 인터넷 자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中国食品安全管理局, <http://www.sda.gov.cn/WS01/CL0050/130920.html>.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legal/2015-10/08/c_128294787.htm.

人民网, <http://legal.people.com.cn/n/2015/0424/c188502-26901019.html>.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51017/45353998_0.shtml.

腾讯网, <http://health.qq.com/a/20150617/014068.htm>.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강화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2014-6,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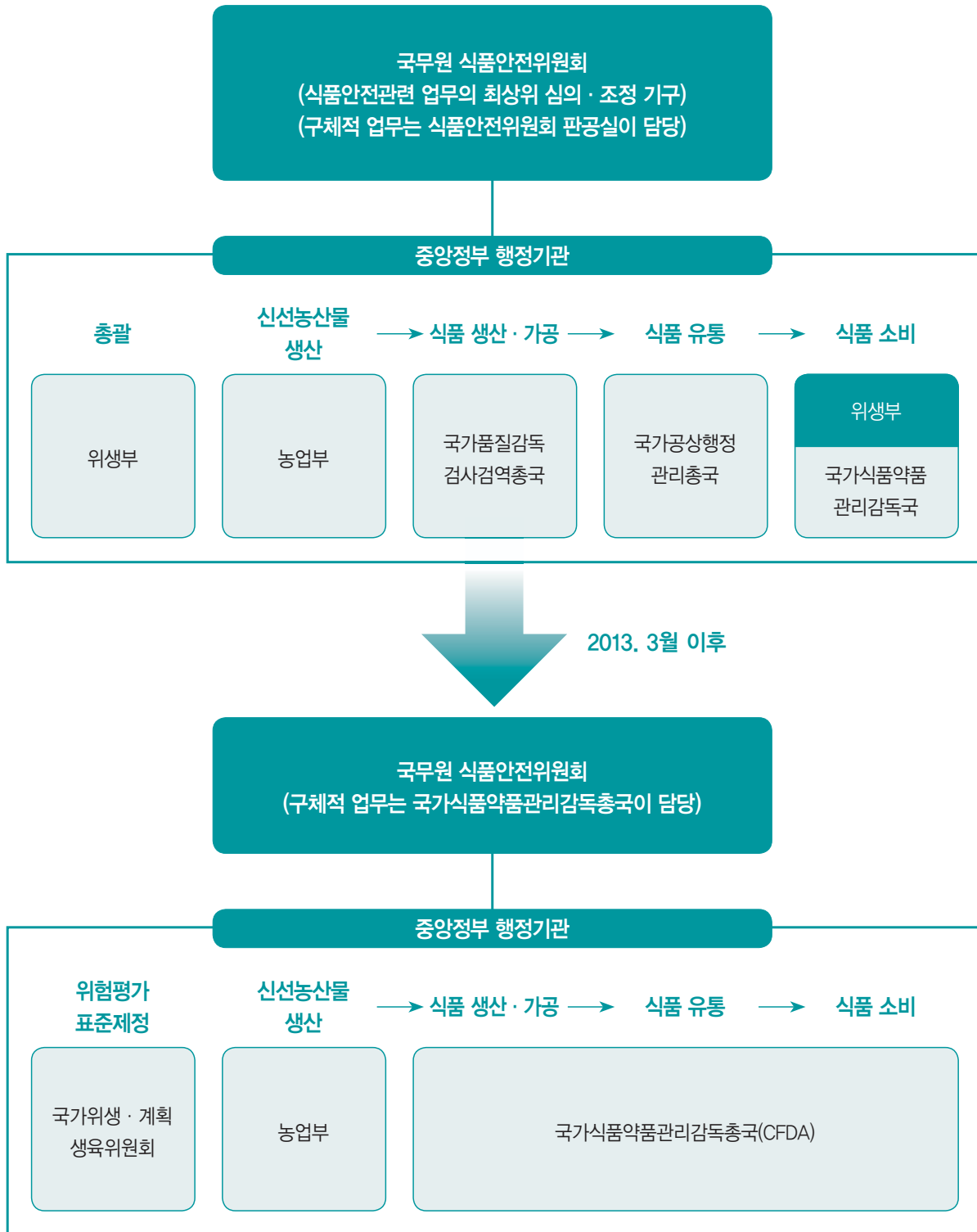
〈표 3〉 현행 중국 식품안전법의 체계

장	제 목	조 항
제1장	총칙	제1조 ~ 제13조
제2장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과 평가	제14조 ~ 제23조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24조 ~ 제32조
제4장	식품생산경영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생산경영과정 통제 제3절 라벨, 설명서, 광고 제4절 특수식품	제33조 ~ 제83조 제1절: 제33조 ~ 제43조 제2절: 제44조 ~ 제66조 제3절: 제67조 ~ 제73조 제4절: 제74조 ~ 제83조
제5장	식품검사	제84조 ~ 제90조
제6장	식품의 수출입	제91조 ~ 제101조
제7장	식품안전사고의 처리	제102조 ~ 제108조
제8장	감독관리	제109조 ~ 제121조
제9장	법률책임	제122조 ~ 제149조
제10장	부칙	제150조 ~ 제154조

는데, 대부분 식품안전관리감독체계 및 처벌 등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흔히 법은 제정목적 혹은 제정의 당위성을 가지고 제정되며, 일정한 이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그럼 중국 「식품안전법」의 제정목적과 주된 이념은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먼저 이를 살펴보고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1조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식품안전을 보장해서 사람의 건강 및 생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동 목적규정은 이번 개정에서도 내용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의 특징은 구법과 달리 식품안전업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안전법」 제3조는 “식품안전업무는 예방중심, 위험관리, 전방위적 통제, 사회협치(사회공동관리)를 실행하여야 하며,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림 2〉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행정조직 체계 변화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제11회 한중농업포럼,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혁과 전망: 식품안전법 개정을 중심으로”, 2014.6.27, 17면.

1. 식품안전감독관리기구의 전문화 및 단일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강화

식품안전법 제5조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법 및 국무원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를 식품안전업무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 식품안전감독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두관리(多头管理)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식품감독관리기구의 단일화 및 전문화를 이룬 것으로, 이번 개정법의 가장 큰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번 개정은 현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李克强)이 직접 주도했는데, 그는 구 식품안전법상 식품안전감독관리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국가식품안전위원회’의 책임자이기도 해서 무엇보다 중국식품감독관리행정상의 문제점을 잘 아는 전문가이다.

또한 구법과 달리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책임과 주요 임무를 명확히 했다. 예를 들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행하여야 하며,¹²⁾ 지방정부의 현지 즉 속지관리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업무를 지방정부의 민생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¹³⁾ 아울러 식품안전을 지방정부의 연간 종합목표·당정지도 인사의 정책업적 심사와 사회종합관리 심사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2. 식품생산업체 경영자의 책임강화(식품생산기업우선책임제)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 하여 식품생산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했으며,¹⁴⁾ 식품생산 경영자의 식품안전 자체검사제도 수립¹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식품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력이 추적되도록 해야 한다.”¹⁶⁾고 규정하여 식품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하고 하고 있으며,

12) 식품안전법 제7조.

13) 식품안전법 제8조 제1항.

14) 식품안전법 제4조.

15) 식품안전법 제44조 제2항.

16) 식품안전법 제42조 제2항.

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식품생산을 중단하고 소비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회수 필요시 즉시 회수하도록 하여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였다.¹⁷⁾

3. 특수식품(보건식품, 분유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중국식품안전법 제74조는 “국가는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배합식품, 영유아 배합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법에는 영유아식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구법은 보건식품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국무원으로 하여금 정하게 했지만, 현행법은 기존 3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구체적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에서 보건식품과 영유아 조제식품을 분리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보건식품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注册)을 해야 하지만, 단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이 비타민 보충제, 광물질 등 영양물질인 경우 출시판매에 앞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备案)를 하게 하여 등록과 신고절차로 이원화 되어 있다.¹⁸⁾

보건식품 라벨 등에 질병예방, 치료효능 등에 대한 표기를 금지하며, 복용가능한 대상자, 성분, 함량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며,¹⁹⁾ 보건식품의 광고는 “본제품은 약물을 대체하지 못함”을 밝혀야 하며, 관리부서의 보건식품 광고 비준문서를 취득해야만 광고가 가능하게 하여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²⁰⁾ 이는 보건식품이 약품처럼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17) 식품안전법 제62조 제2항.

18) 식품안전법 제76조. 등록(注册)은 CFDA(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의 심사를 요하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인 반면, 신고(备案)는 심사를 요하지 않아 등록에 비해 용이하다.

19) 식품안전법 제78조.

20) 식품안전법 제79조.

이다. 그리고 보건식품 원료리스트, 보건기능 리스트 공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²¹⁾ 보건식품은 수출국에서 허가·판매되는 식품만 수입 가능하도록 해서 유해한 보건식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²²⁾

(2) 영유아 조제식품

신선우유, 분유 등 영유아 조제식품의 원료입고 제품 출고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실시하여야 하며,²³⁾ 영유아조제분유의 제품 배합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하며,²⁴⁾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라벨 등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하게 하였다.²⁵⁾

또한 분할포장 방식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할 수 없으며 동일 기업에서 동일한 배합방법으로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할 수 없게 하였다.²⁶⁾ 이는 일부 분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분할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원료의 2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분할 포장을 할 때 일부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4.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식품에 대한 관리강화 및 배상책임강화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에 대해 실명 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영업자의 허가증에 대한 심사의무도 부과하는 등 제3자 플랫폼 제공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²⁷⁾ 만약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제3자 플랫폼 제공자의 연대책임과 선 배상을 의무화하고 있다.²⁸⁾ 이는 기존 온라인전자상거래 특히 B2B상

21) 식품안전법 제75조 제2항, 제3항.

22) 식품안전법 제76조 제2항.

23) 식품안전법 제81조.

24) 식품안전법 제81조 제4항.

25) 식품안전법 제81조 제3항.

26) 식품안전법 제81조 제6항.

27) 식품안전법 제62조 제1항.

28) 식품안전법 제131조 제2항.

거래에서 난무하는 가짜식품, 모방 식품, 불량식품 등에 대한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식품구매가 높아지는 작금에 있어서 매우 유효한 조치이다.

5. 식용 농산물에 대한 농약관리 강화 및 유전자 조작식품

“국가는 농약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행, 채소, 과일, 차 및 중약재에 고독성, 고잔류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며, 고효율, 저독성, 저잔류 농약의 연구개발 및 사용 장려해야 한다.”²⁹⁾고 규정하여 식용농산물에 대한 농약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식품(GMO 제품)은 규정에 따른 표시의무를 명확히 이행하여 식품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³⁰⁾

6. 수출입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이번 개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수입되는 식품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 검사합격증명서류의 첨부하여야 하며,³¹⁾ 만약 중국식품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했다.³²⁾ 또한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외수출업체, 해외식품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수입산 식품이 본 법, 중국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수입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³³⁾ 만약 수입식품이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증거·증명이 발견되면, 수입상은 수입을 중지하는 동시에 반드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³⁴⁾ 이외에도 등록된 해외식품 생산기업이 허위자료 제공하거나 생산기업의 귀책사유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한다.³⁵⁾

29) 식품안전법 제11조 제2항.

30) 식품안전법 제69조.

31) 식품안전법 제91조 제3항.

32) 식품안전법 제93조.

33) 식품안전법 제94조 제1항.

34) 식품안전법 제94조 제3항.

35) 식품안전법 제96조 제1항.

7. 식품안전사고 관련 처벌 강화

불법 첨가물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 5~10배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구법의 규정을 15~30배로 대폭 인상하여 관련범죄를 근절하고,³⁶⁾ 심각한 범죄 시 식품업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식품 안전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나아가 소비자가 부적합 식품으로 손실을 본 경우, 경영자 또는 생산자에게 손실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상을 요구받은 자는 소비자에게 먼저 배상 후,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피해로 인한 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³⁷⁾

특히 이번 개정에는 식품생산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식품안전문제로 인하여 허가증이 취소된 기업의 책임자는 5년간 식품생산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³⁸⁾ 식품안전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을 처벌 받은 자는 영원히 식품생산경영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³⁹⁾ 나아가 정부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여 감독관리책임을 제고하고 있는데 만약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책임자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가 심각할 경우 면직처분하도록 하는 등 문책을 강화하였다.⁴⁰⁾

또한 중국의 식품가격이 저렴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한 배상액이 소액인 것을 감안하여 징벌성 배상의 최저액수를 1,000위안으로 정했다.⁴¹⁾

IV.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의 개정 현황

중국은 「식품안전법」의 전면개정에 이어서, 하위 시행규정인 「식품안전법 실시조례」⁴²⁾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공포되어 의견수

36) 식품안전법 제123조.

37) 식품안전법 제148조.

38) 식품안전법 제135조 제1항.

39) 식품안전법 제135조 제2항.

40) 식품안전법 제143조.

41) 식품안전법 제148조.

42) 동 조례는 2009년 7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9년 7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럼과정 중에 있는 개정초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조례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하지만 필자가 중국식품안전법 전문가인 중국인민대학 왕꾸이송(王贵松) 교수와의 통화에서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의 금년 내 개정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봤지만, 왕교수는 실시조례가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는 총 10장, 총 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 초안은 무려 200개 조항으로 조문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4장 식품생산경영(14개 조항 ⇨ 63개 조항), 제8장 감독관리(8개 조항 ⇨ 38개 조항), 제9장 법률책임(7개 조항 ⇨ 28개 조항) 부분의 조항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시조례개정초안은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식품생산경영,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의 영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내용도 상당히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면 개정된 「식품안전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와 개정안 비교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안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제5조~제14조)	제2장 식품안전 모니터링 및 평가(제9조~24조)
제3장 식품안전표준(제15조~제19조)	제3장 식품안전표준(제25조~제30조)
제4장 식품경영(제20조~제33조)	제4장 식품생산경영(제31조~제93조) 제1절 일반규정(제31조~제38조) 제2절 생산경영과정통제(제39조~제66조) 제3절 식용농산물 시장판매(제67조~제73조) 제4절 상표, 설명서 및 광고(제74조~제78조) 제5절 특수식품(제79조~제93조)
제5장 식품검사(제34조~제35조)	제5장 식품검사(제94조~제103조)
제6장 식품수출입(제36조~제42조)	제6장 식품수출입(제104조~제117조)
제7장 식품안전관리사고처리(제43조~제46조)	제7장 식품안전사고처리(제118조~제128조)
제8장 감독관리(제47조~제54조)	제8장 감독관리(제129조~제166조)
제9장 법률책임(제55조~제61조)	제9장 법률책임(제167조~제194조)
제10장 부칙(제62조~제64조)	제10장 부칙(제195조~제200조)

V. 나가며

중국은 자국 내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처, 나아가 자국 식품의 해외수출 촉진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이미 식품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가장 상위의 법률로서 중국 식품안전의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정책의 기초가 ‘식품위생’에서 ‘식품안전’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평가될 만큼 이번 개정에서는 감독관리의 체계와 기준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다. 중국 식품의 수입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환영할 만 하지만,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의 변화된 정책과 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나아가 예전보다 수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식품의 수출이든 수입이든, 식품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므로 이러한 중국의 법 개정 및 관련 정책의 변화는 환영할 만 하다.

참고문헌

- 노은영, “중국식품안전법 개정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년 제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강화조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201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제11회 한중농업포럼 자료집,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혁과 전망: 식품안전법 개정을 중심으로”, 2014.6.27.
 王崇民 林雨晨, 新《食品安全法》10月1日实施, 综合详解新法与旧法区别, 食品安全导刊 2015年10月°
 中国食品安全管理局, <http://www.sda.gov.cn/WS01/CL0050/130920.html>.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legal/2015-10/08/c_128294787.htm.
 人民网, <http://legal.people.com.cn/n/2015/0424/c188502-26901019.html>.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51017/45353998_0.shtml.
 腾讯网, <http://health.qq.com/a/20150617/014068.htm>.

